

경 고 장

기	관	명	영 광 군
위반 및 처분내용			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(이하 '지방계약법')」 제33조 및 제33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가 사업자(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)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(지방의회를 포함한다)에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하여야 합니다.

그런데 귀 기관에서는 「지방계약법」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군의회 등 관계 행정기관에 확인하지 않았고, 이로 인해 수의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군의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와 '18. 7. ~ '22.1월까지의 기간 동안 총 32회에 걸쳐 23,234천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「지방계약법」을 위반하였습니다.

이에 따라 귀 기관을 엄중 「경고」 하니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3월 28일

행정안전부장관

